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 ○ 「내수면어업법」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 ○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○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 ○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～제7조)
 ○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 ○ 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 ○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 ○ 관련법령 :「내수면어업법」제10조, 제16조, 제19조의2
 ○ 예산조치사항 : 해당없음
 ○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(기간 '19. 8. 26 ~ 9. 16)
 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
 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 ○ 본 제정조례안은「내수면어업법」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,
 ○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,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,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·관리와 수산자원 보호·육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